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319 2023. 6. 12.(월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12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옥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○「공무원 여비규정」개정(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3.2.)사항을 반 영하여 국내 출장에 따른 운임·숙박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워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부정하게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조항 신설(안 제4 조의2)
 - 부정 수령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
- O 국내 출장 시 운임·숙박비 지급기준 개정 (안 별표)
 - 운임 지급기준을 '정액'에서 '실비'로 변경
 -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조정
-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(안 제5조 4호 및 8호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○「지방공무원법」제46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이에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8조의8 제1항에 부정 수령 가산 징수 근거를 두었고, 제2항에서 징수 절차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음.
- 현행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는 여비의 부정 수령 경우 환수 및 가산 징수 근거와 절차가 없었기에 이번 일부개정조례 안은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 정 수령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 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음.
- O 또한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

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내지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.

- ○「공무원 여비규정」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에 따른 [별표]의 운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,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무출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음.
- O 현행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용어 중 정비가 필요한 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정확한용어 사용으로 정비하였음.
- 종합적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국내 출장에 대한 여비의 현실성 있는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.
- O 다만, 지역별 숙박비의 지급 상한액 인상되어 향후 5년간 3억 3,787만 5천원이 세출 추계되므로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여비 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관리와 부정 수령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 론 요 지: "생략"

6. 심 사 결 과 : "원안가결"
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) ① 도지사는 「지방 공무원법」 제46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 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,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- 1.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 근거
- 2. 부정 수령한 금액,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
- 3.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
- ②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 제4호 중 "동규정 별표 1에"를 "별표에"로, "별표 1에"를 "별표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"해당공무원란"을 "해당 공무원란"으로, "임기제 공무원"을 "임기제공무원"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운임.숙박비 지급표

(단위:원)
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숙박비 (1박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실비
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100,000, 광역시 80,000, 그 밖의 지역은 70,000)

- 비고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 - 1의2.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,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- 2.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 - 3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「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」을 준용한다.
 - 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부정 수령 여비의 환
	수 및 가산징수 절차) ① 도지사
	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 및
	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
	정」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
	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
	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
	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
	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
	제시하고,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
	<u> 어야 한다.</u>
	1.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
	<u>근거</u>
	2. 부정 수령한 금액, 가산징수
	금액 및 총 징수금액
	3.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
	②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
	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
	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
	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
	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
	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
	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개 정 안

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 을 준용하되, 영을 준용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"
 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제4조
 및 <u>동규정 별표 1에"</u>를 "
 「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2조 및 <u>별표 1에"로</u>
 본다.

4의2. ~ 7. (생략)

8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"「공무원보수규정」" 은 "「지방공무원 보수규 정」"으로, "「공무원임용 령」"은 "「지방공무원 임용 령」"으로, "일반임기제공무 원"은 "개방형직위에 임용되 는 임기제공무원",으로 "전 문임기제공무원"은 "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"으로 한다

,,
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
 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에 "</u> 별표
<u>" 로</u>
사이어 무 (취레기 기수)
4의2. ~ 7. (현행과 같음) 8 해당 공무원
· <u>예 6 6 1 년</u> 란

임기제공무원-----

관련법령

□「지방공무원법」

- 제46조(실비보상 등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,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공무원 여비규정」

제10조(철도운임의 지급)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(實費)로 지급한다.

제11조(선박운임의 지급)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. 제12조(항공운임의 지급)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.

제13조(자동차운임의 지급)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.

제16조(일비·숙박비·식비의 지급)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(日費)·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,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(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)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,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□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「지방공무원법」제46조제

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「행정절차법」

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 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7. 생략

제22조(의견청취)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재정법」

- 제87조(관리의 방법 등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,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,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,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 -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,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113조(강제이행의 청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 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 당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3. 생략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개정이유

-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, 「공무원 여비규정」개정(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3.2.)에 따라 국내출장에 따른 운임·숙박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함.

○ 주요내용

- 부정하게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조항 신설(안제4조의2)
- 국내 출장 시 운임·숙박비 지급기준 개정(안 별표)
 - 운임 지급기준을 '정액'에서 '실비'로 변경
 -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조정
 [현행] 제2호 실비 (서울 70천원/ 광역시 60천원 / 그 외 50천원
 [개정] 제2호 실비 (서울 100천원/ 광역시 80천원 / 그 외 70천원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(안 제5조)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숙박비 지급 금액 현실화에 따라 여비 지급 비용 증가

3. 관련조문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[별표]
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숙박비 (1박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실비
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100,000, 광역시 80,000, 그 밖의 지역은 70,000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운임 지급기준을 '정액'에서 '실비'로 변경 : 운임비용과 관련하여 정액과 실비 두 가지 모두 출장지까지의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며
 - 다만, 출장지까지의 대중교통편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연료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, 기존 운임 비용 예산과 별 차이가 없음
-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인상 : 지급일 1,032박 / 지역구분

나. 추계 결과

○ 숙박비 : 향후 5년간 337,875천원 세출 추계

- 서 울: 98박 × 100천원 = 9,800천원

- 광 역 시 : 132박 × 80천원 = 10,560천원

- 기 타 : 802박 × 70천원 = 56,140천원

※ 2호 기준 숙박 수 × 변경된 숙박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1차년도 ('23년)	2차년도 ('24년)	3차년도 ('25년)	4차년도 ('26년)	5차년도 ('27년)	계
숙박비	31,875	76,500	76,500	76,500	76,500	337,875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로 충당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국 인사혁신과장 최병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'23년)	2차년도 ('24년)	3차년도 ('25년)	4차년도 ('26년)	5차년도 ('27년)	계
入	에 입						
į	국 비						
]	도 비						
기타 (사업수입)							
入	를 출	31,875	76,500	76,500	76,500	76,500	337,875
국내여비		31,875	76,500	76,500	76,500	76,500	337,875
재원 조달		31,875	76,500	76,500	76,500	76,500	337,875
	소 계						
의	보조금						
존 재 원	지방 교부세						
	도 비						
자 체 수 입	소 계	31,875	76,500	76,500	76,500	76,500	337,875
	지방세	31,875	76,500	76,500	76,500	76,500	337,875
	세외수입						